

KIPEC 세미나 리포트

미국 통상정책 재편과 한국에 대한 합의

부제 : 한미경제연구소 톰 라마지 연구원 초청 세미나 결과 보고서

한미의회교류센터(KIPEC)는 7 월 16 일(현지시간) 한미경제연구소(Korea Economic Institute of America, KEI) 톰 라마지(Tom Ramage) 연구원을 초청하여 미국 통상정책 재편 동향과 한국에 대한 합의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발표자는 최근 미국 통상정책의 변화와 관세정책, 무역법 제 301 조 및 무역확장법 제 232 조의 활용 가능성을 중심으로 미국의 통상환경 변화를 분석하고, 이러한 변화가 한국의 대미 수출과 투자에 미칠 영향을 설명하였다.

발표자는 한미 양국 간 협상을 통해 한국산 제품과 자동차·자동차부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이 15% 수준으로 조정된 배경을 설명하고, 무역법 제 301 조에 따른 강제노동 및 과잉생산 관련 조사와 무역확장법 제 232 조의 적용 대상이 반도체와 의약품 분야로 확대될 가능성을 소개하였다. 아울러, 3,500 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펀드 조성, 방위산업 협력 확대, 한국의 대미 포트폴리오 투자 확대 등 투자·금융 측면의 한미 경제관계 현황을 설명하고, 다자통상체제 약화에 따른 양자협상 중심 통상질서로의 전환 가능성을 전망하였다.

● 미국 통상정책 재편과 관세정책 변화

발표자는 최근 미국의 통상정책이 자유무역 확대보다 경제안보와 산업경쟁력 강화를 우선하는 방향으로 재편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를 위해 미국 행정부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무역법 제 122 조와 제 301 조, 무역확장법 제 232 조 등 다양한 법적 수단을 활용하여 관세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제도들이 관세 부과뿐 아니라 주요 교역상대국과의 협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한국은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국가별 관세율을 15%로 조정하였으며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에도 동일한 수준의 관세가 적용되고 있다. 이는 경쟁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여건을 피했다는 의미가 있으나, 한미 자유무역협정(KORUS FTA) 체결국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기존 FTA 의 실질적인 혜택은 일부 약화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제기되었다. 또한 미국이 향후 무역확장법 제 232 조 조사를 반도체와 의약품 등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관련 산업의 불확실성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한편 관세조치 이후에도 한국의 대미 수출은 일부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증가세를 유지하였다. 특히 반도체, 전자집적회로, 데이터 저장장치, 전력기기 등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구축과 관련된 품목의 수출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발표자는 미국 내 AI 인프라 투자 확대와 데이터센터 건설 수요가 한국의 첨단 제조업 경쟁력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이러한 품목은 미국 공급망에서 단기간에 대체하기 어려운

특성을 갖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다만 향후 품목별 추가 관세가 도입될 경우 한국 기업의 수출과 투자전략에도 새로운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였다.

● 무역법 제 301 조 조사 동향

발표자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강제노동과 과잉생산 능력을 이유로 무역법 제 301 조 조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조사가 통상정책의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특히 제 301 조는 무역분쟁 해결을 넘어 주요 교역상대국과의 협상력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하였다. 강제노동 관련 조사는 한국을 포함한 60 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대상 국가에는 12.5%의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다만 해당 국가가 미국이 요구하는 강제노동 금지 조치를 이행할 경우 관세율은 10% 수준까지 조정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¹ 반면 과잉생산능력 관련 조사는 16 개국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관세율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무역법 제 122 조 관세 종료 이전에 조사가 마무리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였다.

발표자는 한국이 OECD 주요 노동기준을 준수하고 있으며 강제노동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국가가 아니라는 점을 언급하였다. 또한 이번 조사 대상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미국과의 교역 규모가 큰 국가라는 점을 들어, 제 301 조 조사가 개별 국가의 노동환경뿐 아니라 미국의 통상정책 전반과 협상 전략의 측면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 한·미 교역 동향

발표자는 관세 부과 이후에도 한국의 대미 수출이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미국과 중국이 한국의 주요 수출시장으로 경쟁하는 가운데, 최근에는 대미 수출이 확대되면서 수출 구조에도 일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특히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제 232 조 관세가 적용되면서, 해당 관세의 영향을 받지 않는 전자제품이 자동차를 넘어 한국의 주요 대미 수출 품목으로 부상하였다고 설명하였다.

발표자는 KEI 에서 분석한 2026 년 1 월부터 5 월까지의 무역통계를 소개하며, 컴퓨터 부품 및 액세서리, 전자집적회로, 메모리 저장장치, AI 데이터센터용 변압기 등의 수출이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하였다. 이와 함께 미국 내 AI 인프라 투자 확대와 데이터센터 건설 수요가 이러한 품목의 수출 증가를 뒷받침하고 있으며, 관련 품목은 미국 공급망에서도 단기간에 대체하기 어려운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반면 반도체에 대한 무역확장법 제 232 조 관세가 실제로 시행될 경우 한미 교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망하였다. 다만 현재까지는 구체적인 시행 여부와 적용 방식이 확정되지 않았으며, 향후

¹ USTR 은 2026 년 7 월 23 일(현지시간) 무역법 제 301 조에 근거해 한국산 제품에 최혜국대우 관세를 포함한 총 12.5%의 강제노동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으며, 2026 년 7 월 24 일 0 시 1 분(미 동부시간)부로 발효되었다.

미국의 추가적인 품목별 관세정책이 한국 기업의 수출과 투자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 한·미 투자협력과 대미 투자

발표자는 최근 한미 경제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상품교역뿐 아니라 투자와 금융을 포함한 보다 포괄적인 관점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였다. 미국은 관세정책과 함께 대규모 대미 투자 확대를 주요 정책 과제로 제시하고 있으며, 한국 기업들은 이미 반도체, 배터리, 에너지, 조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미국 내 투자를 확대해 왔다고 평가하였다. 주요 사례로는 고려아연이 테네시주 클라크스빌에서 추진 중인 74 억 달러 규모의 핵심광물 제련·정련시설과 한국 기업 및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루이지애나 연안 부유식 액화천연가스(FLNG) 사업을 소개하였다.

3,500 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기금과 관련해서는, 실제 사업이 추진될 경우 자원 조달 방식과 사업 선정 기준, 투자수익 배분, 위험 부담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투자사업은 경제성과 상업적 타당성을 기반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국가 재정과 외환 운용에 미치는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방위산업 분야에서는 과거 미국산 구매법(Buy American Act)과 번스-톨레프슨 수정조항(Byrnes-Tollefson Amendment) 등으로 인해 한국 기업의 미국 방산시장 진출에 제도적 제약이 존재했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함정 10 척 건조를 요청한 사례를 소개하며, 한화의 K9 자주포 생산 사례 등을 고려할 때 한국 방산기업이 향후 미국 국방 공급망에서 보다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하였다.

한국의 대미 포트폴리오 투자와 관련해서는, 2025 년 한국의 대미 순매수 규모가 736 억 달러로 2024 년 대비 약 5 배 증가하였으며, 이는 국부펀드를 보유한 싱가포르와 노르웨이에 이어 세계 3 위 수준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이러한 투자 증가의 상당 부분은 개인 소액투자자의 해외투자 확대에 기인한다고 소개하였다. 아울러 한국은행의 국제투자대조표(International Investment Position, IIP)를 인용하며, 한국의 대미 포트폴리오 투자 잔액은 8,028 억 달러에 달하고, 전 세계 포트폴리오 투자 증가분 가운데 대미 투자 증가 규모는 1,786 억 달러로 나타났다고 설명하였다.

끝으로 발표자는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 한국 기업의 미국 투자 확대를 촉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지만, 이후 보조금 제도와 시장환경 변화에 따라 일부 기업은 투자 전략을 조정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향후 대미 투자사업은 정부의 정책 지원뿐 아니라 시장 수요와 수익성, 지역별 산업 기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될 필요가 있으며, 투자지역 선정 과정에서는 연방정부의 정책뿐 아니라 주정부의 산업정책과 투자환경 역시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 미국 통상정책 전망

발표자는 미국의 통상정책은 향후 어느 행정부가 출범하더라도 단기간에 크게 변화하기보다 상당 부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였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에서 도입된 관세정책은 단순한 일시적 조치가 아니라 미국 통상정책의 구조적 변화로 볼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먼저 발표자는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중국에 부과한 무역법 제 301 조 관세가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대부분 유지된 점에 주목하였다. 이를 근거로 관세는 일단 도입되면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쉽게 철폐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며, 일부 무역확장법 제 232 조 관세 역시 계속 유지될 수 있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관세는 미국 정부의 세수 확보와 협상력을 높이는 정책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어 향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발표자는 앞으로 미국 통상정책이 다자주의보다 양자 협상 중심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였다. 과거에는 통상 분쟁이 발생하면 세계무역기구(WTO)를 통한 해결이 일반적이었으나, 최근 WTO의 역할이 점차 약화되면서 기업과 각국 정부는 미국과 직접 협상하는 방식에 더욱 의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였다. 이와 함께 미국은 첨단 반도체 수출통제와 같은 경제안보 정책에서도 다자 공조보다는 자국 중심의 독자적 접근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권한이 다른 국가와의 협상 과정에서 전략적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발표자는 현재의 관세정책이 미국 역사에서 새로운 현상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하였다. 미국은 제 1차 세계대전 이전까지 관세수입을 연방정부의 주요 재원으로 활용하였으며, 최근 미국 정부는 관세를 미국 통상정책의 전통적인 정책수단으로 재조명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향후 정책 방향과 관련하여 발표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자문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스티븐 마이런(Stephen Miran)의 구상을 소개하였다. 마이런은 세계 무역체제 재편을 위한 사용자 안내서(A User's Guide to Restructuring the Global Trading System)에서 이른바 '마라라고 협정(Mar-a-Lago Accord)' 구상을 제시하였다. 마이런은 미국의 주요 교역국들이 보유한 대규모 달러 외환보유액이 대미 수출 확대를 가능하게 하는 국제경제 구조와 연계되어 있다고 보고, 이러한 구조를 재조정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또한 미국이 세계 안보를 상당 부분 부담하고 있는 만큼 동맹국들도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는 논리를 제시한 것으로 설명하였다.

발표자는 이러한 구상이 과거 닉슨 행정부의 사례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1971년 닉슨 행정부는 교역 상대국들의 환율 조정을 유도하기 위한 협상수단으로 10%의 관세를 부과하였으며, 이후 협상을 통해 달러 가치가 조정된 사례를 언급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현재 진행되고 있는 관세 부과와

무역법 제 301 조 조사 역시 국제 경제질서 재편과 협상을 위한 초기 단계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발표자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이 미국의 보호무역 전통과 연결되어 있다고 평가하였다. 미국 정부는 알렉산더 해밀턴(Alexander Hamilton), 헨리 클레이(Henry Clay), 프리드리히 리스트(Friedrich List) 등이 주장했던 유치산업 보호와 산업육성 논리를 현대 통상정책의 역사적 배경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공화당 행정부가 출범할 경우 현재의 관세정책은 상당 부분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였다. 반면 민주당 행정부가 출범할 경우에는 관세로 인한 물가 상승과 소비자 부담 확대를 주요 쟁점으로 제기하며 일부 관세 조정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KIPEC is registered under FARA. This material is distributed by the Korea Inter-Parliamentary Exchange Center (KIPEC) on behalf of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Additional information is on file with the Department of Justice, Washington, D.C.